

시간강사 관리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시간강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시간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.

제3조 (자격) 시간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와 타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된 자<개정 2012. 9. 12.>
2. 특수한 경우 전호의 자격에 미달되더라도 교육 및 연구업적과 현장경험의 전문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이의 경우 교무처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할 수 있다.

제4조 (임용) ① 대학은 학과장이 교무처장에게, 대학원은 학부주임이 원장에게 위촉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시간 강사의 임용 추천서와 신규임용 및 재임용 평가표를 개강 1.5개월 전에 제출하고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6.03.01.>

② 은퇴교수 및 명예교수는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강사로 임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6.03.01.>

제5조 (임용기간) ① 시간강사 임용은 학기단위로 하며 7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 단, 현직 목회자는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9. 1., 2009. 6. 18., 2010. 9. 2.>

② 임용 총기간이 10년을 넘어 재계약할 경우에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. <신설 2008. 9. 1.>

제6조 (임용평가 및 재임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자격이 있더라도 시간강사로 임용할 수 없으며, 수업일수 15주 이상 준수여부, 수업시간 준수 여부, 출결관리 규정 준수 여부, 출석부 기한내 제출 여부, 강의계획서 기한내 입력여부, 휴/보강일 준수여부, 성적입력 및 정정 기한내 준수여부, 강의평가, 교수자로서의 품위 등을 고려하여 임용의 취소 혹은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9. 1., 2016.03.01., 2017.11.21.>

1.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자
2. 품행이 본 교단 및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<개정 2016.03.01.>
3. 전 학기 출강 실적이 불량하거나 강의평가 성적이 저조한 자.<신설 2016.03.01.>
4. 신규임용 및 재임용 심사는 별표1-3에 의거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. <신설 2016.03.01.>
5. 재임용 심사는 임용학기 직전의 한 학기 강의에 대하여 평가한다. <신설 2016.03.01.>

제7조 (담당시간) 시간강사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하를 담당하여

야 한다. 단, 65세 이상은 주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70세 이후에는 강의 할 수 없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70세 이상도 강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3.>

제8조 (제출서류) 신규 임용대상자는 시간강사 신규임용 추천서(별표4)와 첨부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재임용의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6.03.01.>

제9조 (의무 및 권리) 1. 임용된 시간강사는 본 대학교의 학사력에 따라 담당과목의 강의와 성적평가 및 수강학생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2. 시간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무처장, 원장은 해임할 수 있다.

3.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도서관 및 교내 시설 이용의 권리를 갖는다.

제10조 (보수)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 (시간강사의 관리) 시간강사의 관리는 소속 교무처 및 대학원에서 행한다.

제12조 (규정의 개정) 본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기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 <개정 2016.03.01.>

부 칙 1

이 규칙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2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4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처우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 나이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5학년도까지 유예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4】

시간강사 신규임용 추천서

성 명 : 영문()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:
현 주 소 :
☎자택: 핸드폰: e-mail:
최 종 학 위 : (학위, 취득년도:)
현 직 :

위 사람을 학년도 제 학기 시간강사로 추천합니다.

개설학과	학년	담당 과 목	학점	담당시간 (주당)	비고

- 첨부서류 : 1. 시간강사 임용지원서(※소정양식) 1부.
2. 수업계획서(※소정양식) 1부.
3. 연구실적목록서(※소정양식) 1부.
4. 교회출석증명서 1부.
5. 석·박사 졸업증명서 1부.
6. 학위증 사본 1부.
7.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.
8.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등록카드(※해당자만) 1부
9. 여권사본(※해당자만) 1부.
10. 국내거소신고증(※해당자만) 1부.

년 월 일

소 속 학 과 :

학과장/대학원장 : (인)

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

*신규임용에 한하여 제출함